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27.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0939	김미애의원	2024.6.25.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8.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2446	성일종의원	2024.7.3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12.)
2203095	조승래의원	2024.8.22.	
2203205	박용갑의원	2024.8.26.	
2208114	이헌승의원	2025.2.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4.28.)
2208217	강준현의원	2025.2.17.	
2208288	김현정의원	2025.2.19.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8714	김한규의원	2025.3.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8.26.)
2214320	이양수의원	20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11.24.)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25.)에
서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25.11.27.)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
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
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을 “제1항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을 “제2조제2호나목·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으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을 “월남전쟁 참전유공

자와 그 유족 중 1명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각각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서----- ----- ----- ----- ----- ----- -----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② ----- -----제1항의----- ----- -----. ----- ----- ----- ----- ----- -----.

부담한다.

③ (생략)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 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 · 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원의 자격) ① -----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
-----월 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은-----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의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24조(사업) 6·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 5. (생략)

[illegible]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24조(사업) -----

1.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2.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3. ~ 5. (현행과 같음)